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101
----------	-----

제출연월일 : 2007. 2. 9.

제 출 자 : 대전광역시장

1. 제안이유

- 가.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거주 밀집지역인 “영구임대주택단지”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확충 개선하여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도모하고,
- 나. 소규모 임대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소규모 임대주택의 유지비·보수비의 지출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영구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제4호).
- 나. 소규모 임대주택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세출에 유지비·보수비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6조제5호).
- 다. 보조금 지급절차 및 정산 등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도록 함(안 제9조제7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대전광역시 임대주택관리규정」
- 나. 예산조치 : 2007년 추경에 반영예정
- 다. 합 의 : 예산담당관실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3) 입법예고 : 2006. 11. 24 ~ 12. 14 / 접수 의견 없음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외의 부분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2조제3호중 “건립하거나 매입하는 사업”을 “건립하거나 매입하는 사업, 유지·보수 관리사업”으로 한다.

제2조제4호중 “제3호”를 “제4호”로 하여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영구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함은 노후되고 열악한 영구임대주택단지의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조경시설, 주차장, 가로등, 담장 등 부대시설 신설 및 개·보수 사업

나.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주민휴게시설, 주민운동시설, 사회복지관 등 복리시설 신설 및 개·보수 사업

다. 그 밖의 주민편익시설 확충 사업

제6조제5호중 “건물매입비”를 “건물매입비·유지비·보수비”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내지 제11호를 제7호 내지 제12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영구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제7조제1항중 “또는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을 “,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 또는 영구임대주택의 관리주체”로 한다.

제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영구임대주택의 관리주체가 자금의 보조를 받고자 하는 경우 「대전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9조제3항제2호가목중 “국민주택기금운용및관리규정(이하 “국민주택기금 운용및관리규정”이라 한다)”을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제3호중 “국민주택기금의운용및관리규정”을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으로 한다.

제9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급절차와 정산 등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제명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를 “대전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로 한다.

제1조중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을 “「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으로,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임대주택법”을 “「임대주택법」”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제9조제3항제2호가목 및 제10조중 “주택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1호가목중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시행령”을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9조제6항중 “국민주택기금운용및관리규정”을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개 정 안
<p>제2조(정의) (생략)</p> <p>1. “농촌주택사업”이라 함은 주택개량 사업을 말하며 주택개량사업은 기존 노후불량주택을 철거한 후 신축, 이축, 증·개축하는 건축행위로서 다음 <u>각목의 1</u>에 해당하는 주택개량을 말한다.</p> <p>가. ~ 나. (생략)</p> <p>2. (생략)</p> <p>3. “소규모 임대주택사업”이라 함은 시장이 저소득층을 위하여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최저주거기준 규모 이상으로 <u>건립하거나 매입하는 사업 및 건물</u>을 임차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p> <p><u><신설></u></p>	<p>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p> <p>1. ----- ----- ----- ----- <u>각 목의 어느 하나</u> ----- -----</p> <p>가. ~ 나.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3. ----- ----- ----- ----- <u>건립하거나 매입하는 사업, 유지·보수 관리사업</u>----- -----</p> <p>4. “<u>영구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u>”이라 함은 <u>노후되고 열악한 영구 임대주택단지의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u>을 말한다.</p> <p>가. <u>조경시설, 주차장, 가로등, 담장 등 부대시설 신설 및 개·보수 사업</u></p> <p>나. <u>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주민휴게 시설, 주민운동시설, 사회복지관 등 복리시설 신설 및 개·보수 사업</u></p> <p>다. <u>그 밖의 주민편익시설 확충 사업</u></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4. “주택사업”이라 함은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하는 것을 총칭한다.</p> <p>제6조(세출) (생략)</p> <p>1. ~ 4. (생략)</p> <p>5. 소규모 임대주택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비·건축비·<u>건물매입비</u> 및 임시거주를 위한 건물 임차료</p> <p><u><신설></u></p> <p>6. ~ 11. (생략)</p> <p>제7조(자금운용) ① 자금은 이를 시장이 직접 운용하거나 자치구 또는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 보조·융자하여 주택사업을 행하게 할 수 있다.</p> <p>② ~ ③ (생략)</p> <p>제8조(자금의 신청) ① ~ ③ (생략)</p> <p><u><신설></u></p>	<p>5. ----- 제4호 -----</p> <p>제6조(세출) (현행과 같음)</p> <p>1.~ 4. (현행과 같음)</p> <p>5. ----- ----- <u>건물매입비·유지비·보수비</u> -----</p> <p>6. <u>영구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u></p> <p>7. ~ 12. (현행과 같음)</p> <p>제7조(자금운용) ①----- -----, <u>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 또는 영구임대주택의 관리주체</u> -----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8조(자금의 신청)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u>영구임대주택의 관리주체가 자금의 보조를 받고자 하는 경우 「대전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9조(용자 및 보조) ① (생략)</p> <p>②시장이 주택사업의 자금을 용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1. ~ 2. (생략)</p> <p>③ (생략)</p> <p>1. (생략)</p> <p>2. (생략)</p> <p>가. 이율 : 주택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주택기금 운용및관리규정(이하 “국민주택기금운용및관리규정”이라 한다)의 이율중 분양주택 자금의 이율</p> <p>나. (생략)</p> <p>3. 연체이율은 국민주택기금의운용및관리규정이 정하는 이율에 의한다.</p> <p>④ ~ ⑥ (생략)</p> <p><u><신설></u></p>	<p>제9조(용자 및 보조)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각 호의 어느 하나</u>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가. 이율 : ----- ----- -----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 ----- -----</p> <p>나. (현행과 같음)</p> <p>3. -----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 -----</p> <p>④ ~ ⑥ (현행과 같음)</p> <p>⑦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급절차와 정산 등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한다.</p>

주 택 법

제4절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등

제73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지방자치단체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자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자체부담금
2.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3. 정부로부터의 보조금
4.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의 차입금
5.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6.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대금
7.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자금의 회수금·이자수입금 그 밖의 수익
8.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건축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③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운용상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등에 대한 특례) ①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영구적인 임대 목적으로 건설된 주택(이하 "영구임대주택"이라 한다)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무주택세대주(제7호의2의 경우에는 세대주요건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를 제외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제1호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4. 「모·부자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모·부자가정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6.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7.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를 말한다)을 부양하는 자로서 제1호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 7의2. 「아동복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8.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9. 청약저축가입자
- ②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순위는 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2에 해당

하는 자, 제8호에 해당하는 자, 제9호에 해당하는 자의 순으로 한다.

③시·도지사 또는 대한주택공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22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청약저축가입자의 경우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었음을 이유로 당해청약저축은 해약되지 아니한다.

④대한주택공사는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중 사회복지관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시·도지사 또는 대한주택공사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입주자선정 및 관리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입주계약, 입주자 관리, 퇴거요건,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관리비보전등 영구임대주택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